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9.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영교

## 1. 제안요지

- 가. 의안번호: 제1853호
- 나. 제출자: 성동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 11. 11.
- 라. 회부일자: 2022. 11. 18.

## 2.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정비(안 제3조)
-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3조)
- 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주민투표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5. 검토의견

##### 가. 제안 취지

-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인의 전자서명을 도입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민투표법 주요 개정내용>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 기준연령 19세 → 18세로 하향 조정
- 주민투표 대상 확대(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전부 주민투표 가능
-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전자서명 도입(제10조 및 제12조)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가능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제16조)
  -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에 국한하지 않고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 가능
-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제18조의2 및 제28조제6호 신설)
- 주민투표결과 확정 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제24조)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시 결과 확정
  -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 모두 개표

###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구의 책무)는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권에 재외국민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재외국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4조를 삭제하였음

-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 됨
- 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에서는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 이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서명부 작성 시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명시한 것으로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아울러,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사항을 명시하였고
  - 단서 조항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 일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통·반 단위에서도 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투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제13조(심의회 운영 등)에서는 「주민투표법」에서 신설된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 법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근거와 기능, 의장 및 위원 정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성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투표권 연령 하향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을 종전 조례에 위임하던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및 조문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됨